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〔장규권 의원 발의〕

의안번호	257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8. 22.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
찬 성 자 : 고영찬 의원

1. 제안이유

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을 3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(안 제3조)

1) 당초 : 2인 이내 ⇒ 변경 : 3인 이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7,920천원(220,000원×3명×12개월) 소요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인”을 “3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 원은 <u>2인</u> 이내로 한다.	제3조(정원) ----- --- <u>3인</u> -----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(제정) 2011.03.18 조례 제66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.
3.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. 다만,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.
4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

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.

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2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입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
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

③ 입법·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

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수임사건의 복대리,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
4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고문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(연1회 1월분).

1.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
2.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

④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부 칙(제663호, 2011.3.1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